

## 【 제휴운전자보험 사업방법서 별지 】

1. 보험의 종류 : 특종 - 기타/비용/기타보험
2. 보험종목의 명칭 : 제휴운전자보험
3. 보험의 목적
  - 1) 자동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각종 위험에 대한 피보험이익
  - 2)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신체상해
4. 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 및 가입연령에 관한 사항
  - 1) 보험기간 :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. 그러나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  - 2) 보험료 납입주기 : 일시납을 원칙으로 함
  - 3) 가입연령 :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,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
5. 의무부가특약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6. 배당에 관한 사항 :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음
7. 보험료 차등 적용에 관한 사항 :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함
8. 보험기간종료후재가입 특별약관 계약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9. 보험료운영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0.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시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1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2. 추가적립보험료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13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4.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5. 공시이율에 관한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6. 기타

- 1) 판매채널 : 범용(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제외)
- 2)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기재사항은 별도의 정한 바에 따름
- 3) 회사는 보험상품의 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를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추가하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음
- 4) 장애인보험전용전환특별약관
  - ① 적용근거 :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
  - ② 적용범위 : 이 특약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음
    - 「소득세법 제59조의4(특별세액공제) 제1항 제2호」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
    -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「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(장애인의 범위) 제1항」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
  - ③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름
  - ④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,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함
  - ⑤ 신규계약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시 이 특약을 신청하고 청약시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처리 가능
  - ⑥ 비영구 장애의 장애기간 종료 후, 다시 장애인이 된 경우는 장애인전용보험 재신청 및 전환가능
  - ⑦ 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장성보험에 부가하되,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도 전환 특약 가입 신청 시 전환 가능